용기 포장에 관한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1995. 6. 16., 법률 제12호)

개정 부분

2006년 6월 15일, 법률 제76호 ~ 최종 개정 2011년 8월 30일, 법률 제105호 ※ 밑줄 부분은 개정 부분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 제2조)

제2장 기본방침 등 (제3조 ~ 제6조)

제3장 재상품화 계획 (제7조)

제4장 배출 억제 (제7조의2 ~ 제7조의7)

제5장 분리수거 (제8조 ~ 제10조의2)

제6장 재상품화의 실시 (제11조 ~ 제20조)

<u>제7장</u> 지정법인 (제21조 ~ 32조)

<u>제8장</u> 기타 사항 (제33조 ~ 제45조)

제9장 벌칙 (제46조 ~ 제49조)

<u> 부칙</u>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용기 포장 폐기물의 배출 <u>억제와</u> 분리수거, 이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분리 기준 적합물의 재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에 따라 일반폐기물의 감량 및 재생자원의 충분한 이용 등을 통한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확보를 도모하고, 이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 제2조 이 법률에서 『용기 포장』(容器包装)라 함은 상품 용기 및 포장<u>(상품 용기 및 포장</u> <u>자체가 유상인 경우를 포함한다)</u>으로서 해당 상품이 소비되거나 해당 상품과 분리된 경우에 불필요해지는 것을 말한다.
 - 2 이 법률에서 『특정용기』(特定容器)라 함은 용기 포장 중 상품의 용기(상품 용기 자체가 유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것으로서 주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이 법률에서 『특정포장』(特定包装)이라 함은 용기 포장 중 특정용기 이외의 것을 말한다.
 - 4 이 법률에서 『용기 포장 폐기물』(容器包装廃棄物)이라 함은 용기 포장이 일반폐기물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1970년 법률 제137호, 이하 『폐기물처리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 것을 말한다.
 - 5 이 법률에서 『분리수거』(分別収集)라 함은 폐기물을 분리하여 수집하고, 수집한 폐기물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분리, 압축, 기타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6 이 법률에서 『분리기준 적합물』(分別基準適合物)이라 함은 기초 지자체(市町村)가 제8조에서 규정하는 기초 지자체(市町村) 분리수거 계획에 기초하여 용기 포장 폐기물에 대하여 분리수거를 하고 얻는 것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주무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주무장관이 기초 지자체(市町村)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시설에서 보관된 것(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일이 분명함으로 재상품화를 하는 것이 필요 없는 물건으로서 주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7 이 법률에서 『특정 분리기준 적합물』(特定分別基準適合物)이라 함은 주무부령으로 정하는 용기 포장의 구분(이하 『용기 포장 구분』이라 한다)마다 주무부령으로 정하는 분리기준 적합물을 말한다.
- 8 이 법률에서 분리기준 적합물에 대해 『재상품화』(再商品化)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 자가 분리기준 적합물을 제품(연료로서 이용되는 제품에 있어서는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의 원재료로서 이용하는 것.
 - 그 자가 연료이외의 용도로 분리기준 적합물을 제품으로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
- 三 분리기준 적합물에 대해서 제1호에 규정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이용하는 자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는 상태에 하는 것.
- 四 분리기준 적합물에 대해서 제1호에 규정하는 제품으로서 그대로 사용하는 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는 상태에 하는 것.
- 9 이 법률에서 용기 포장에 대해서 『사용하다』(用いる)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 그 판매하는 상품을 용기 포장에 넣거나 용기 포장으로 포장하는 행위(타인 (외국환 및 외국 무역법(1949년 법률 제228호)제6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이하 조항 및 다음 조항에서 같다.)의 위탁(주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조항에서 같다)을 받고 수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 그 판매하는 상품을 용기 포장에 넣거나 용기 포장으로 포장하여 수입하는 행위(타인의 위탁을 받고 수행하는 것을 제외한다)
- 三 제2조제9항제2호에 정한 행위를 타인에 대하여 위탁을 하는 행위
- 10 이 법률에서 특정용기에 대해 『제조 등』(製造等)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 특정용기를 제조하는 행위(타인의 위탁(주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조항에서 같다)을 받고 수행하는 것을 제외한다)
 - _ 특정용기를 수입하는 행위(타인의 위탁을 받고 수행하는 것을 제외한다)
 - 三 제2조제9항제2호에 정한 행위를 타인에 대하여 위탁을 하는 행위
- 11 이 법률에서 『특정용기 이용사업자』(特定容器利用事業者)라 함은 그 사업(수익사업으로서 주무부렁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특정용기를 사용하는 사업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 一 국가
- 二 지방 공공 단체
- 三 특별 법률에 따라 특별 설립행위로서 설립된 법인 또는 특별 법률에 따라 설립 되었고 동시에 그 설립에 관한 행정청의 인가를 요하는 법인 중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것
- 四 중소기업기본법(1963년 법률 제154호)제2조제5항에 규정하는 소규모 기업자, 기타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 사업 연도(그 기간이 1년을 넘어가는 경우는 해당 기간을 그 시작일 이후 1년마다 구분한 각 기간)에서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판매액이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인자
- 12 이 법률에서 『특정용기 제조 등 사업자』(特定容器製造等事業者)라 함은 특정용기 제조 등의 사업을 하는 자로서 제1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를 말한다.
- 13 이 법률에서 『특정 포장 이용사업자』(特定包装利用事業者)라 함은 그 사업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특정 포장을 사용하는 사업자로서 제1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를 말한다.

제2장 기본방침 등

(기본방침)

- 제3조 주무장관은 용기 포장 폐기물의 배출 <u>억제와</u> 분리수거, <u>분리기준 적합물의</u> 재상품화 등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용기 포장 폐기물의 <u>배출 억제와</u> 분리 수거 및 분리기준 적합물의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기본 방침(이하『기본 방침』 (基本方針)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 2 기본 방침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해야 한다.
 - 용기 포장 폐기물의 <u>배출 억제와</u> 분리수거 및 분리기준 적합물의 재상품화 촉진 등의 기본적 방향
 - 二 용기 포장 폐기물의 배출 억제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 三 용기 포장 폐기물의 분리수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지역에 관한 사항 및 용기 포장 폐기물의 분리수거 촉진을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 <u>四</u> 분리수거된 용기 포장 폐기물의 재상품화를 위한 원활한 인도, 기타 적정한 처리에 관한 사항

- 五 분리기준 적합물의 재상품화 등의 촉진을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 六 원활하고 효율적인 용기 포장 폐기물의 분리수거, 분리기준 적합물의 재상품화를 위해 필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 七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으로서 <u>용기 포장 폐기물의 배출 억제와 분리수거,</u> 분리기준 적합물의 재상품화 등의 촉진의 의의에 관한 지식의 보급에 관한 사항
- 八 기타 용기 포장 폐기물의 <u>배출 억제와</u> 분리수거 및 분리기준 적합물의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중요사항
- 3 주무장관은 기본 방침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 할 때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해야 한다.

(사업자 및 소비자의 책무)

제4조 사업자 및 소비자는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용기 포장의 사용, 용기 포장의 과잉한 사용 억제 등 용기 포장 사용의 합리화에 따라 용기 포장 폐기물의 배출을 억제하는 노력과 동시에 분리기준 적합물의 재상품화를 하고 얻을 수 있는 물품 또는 이를 사용하는 물품의 사용 등에 따라 용기 포장 폐기물의 분리수거, 분리기준 적합물의 재상품화 등을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의 책무)

- 제5조 국가는 용기 포장 폐기물의 <u>배출 억제와 분리수거 및</u> 분리기준 적합물의 재상품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확보, 기타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국가는 물품의 조달에 있어서는 <u>용기 포장 폐기물의 배출 억제에 이바지하는 것 또는</u> 분리기준 적합물의 재상품화를 하고 얻을 수 있는 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물품의 이용을 촉진하도록 필요한 고려를 해야 한다.
 - 3 국가는 용기 포장에 관하여 정보의 수집, 정리, 활용, 용기 포장 폐기물의 <u>배출 억제와</u> <u>분리수거</u>, 분리기준 적합물의 재상품화 등의 촉진에 이바지하는 과학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개발 추진 및 그 성과의 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 해야 한다.
 - 4 국가는 교육활동,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용기 포장 폐기물의 <u>배출 억제와 분리수거,</u> 분리기준 적합물의 재상품화의 촉진 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하고, 그 실시에 관하여 국민의 협력을 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방 공공 단체의 책무)

- 제6조 기초 지자체(市町村)는 그 구역 내에서의 용기 포장 폐기물의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광역 지자체(都道府縣)은 기초 지자체(市町村)에 대한 제6조제1항의 책임이 충분히 달성되도록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3 광역 지자체(都道府縣) 및 기초 지자체(市町村)는 국가의 시책에 준하여 <u>용기 포장</u> <u>폐기물의 배출 억제와</u> 분리기준 적합물의 재상품화 등을 촉진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장 재상품화 계획

- 제7조 주무장관은 기본 방침에 입각하여 주무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5년 단위로 분리기준 적합물의 재상품회에 관한 계획(이하『재상품화 계획』(再商品化計画)이라 한다)을 정해야 한다.
 - 2 재상품화 계획에서는 특정 분리기준 적합물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해야 한다.
 - 각 연도에서의 재상품화가 되는 해당 특정 분리기준 적합물량의 목표
 - 二 해당 특정 분리기준 적합물의 재상품화를 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三 해당 특정 분리기준 적합물의 재상품화의 구체적 방안에 관한 사항
 - 四 기타 해당 특정 분리기준 적합물의 재상품화의 실시에 관한 중요한 사항
 - 3 주무장관은 재상품화 계획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했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 해야 한다.

제4장 배출 억제

(용기 포장 폐기물 배출억제 추진원)

- 제7조의2 환경장관은 용기 포장 폐기물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활동의 추진에 열의와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용기 포장 폐기물 배출 억제 추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 2 용기 포장 폐기물 배출 억제 추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 <u>- 용기 포장 폐기물의 배출 상황 및 사업자와 소비자와의 제휴에 의하여 용기 포장</u> 폐기물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계몽하는 것.
- <u>__</u> 용기 포장 폐기물의 배출 상황 및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대응에 관하여 조사를 수행하며, 소비자에 대한 <u>__</u> 요구에 따른 해당 조사에 기초 지도 및 조언하는 것.
- 3 환경장관은 용기 포장 배출억제 추진위원이 실시하는 용기 포장 폐기물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의 제공,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경장관에 의한 정보의 수집, 정리 및 제공 등)

- 제7조의3 환경장관은 제7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용기 포장 폐기물 배출억제 추진원이 수행하는 조사에 따라 얻은 정보, 기타 그 보급이 용기 포장 폐기물의 배출억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 정리 및 제공에 노력해야 한다.
 - 2 환경장관은 용기 포장 폐기물의 배출 억제를 촉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연도마다 용기 포장 폐기물 배출량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u>(사업자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u>

- 제7조의4 주무장관은 용기 포장 폐기물의 배출억제를 촉진하기 위해 주무부령으로 그 사업에서 용기 포장을 사용하는 사업자로서, 용기 포장의 과도한 사용 억제, 기타포장 용기의 사용 합리화를 수행하는 일이 특히 필요한 업종으로서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것에 속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하『지정 용기 포장 이용사업』(指定容器包装利用事業者)이라 한다)이 용기 포장의 사용 합리화에 의한 용기 포장 폐기물의 배출억제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 해당 사업자의 판단기준이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해야 한다.
 - 2 제7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은 기본 방침에 입각 하여 포장 용기의 사용 합리화 상황, 용기 포장의 사용 합리화에 관한 기술 수준, 기타 상황을 감안하여 정함으로서 이들 상황의 변동에 따른 필요한 개정을 해야 한다.
 - 3 주무장관은 제1항에 규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해야 하는 때는 미리 환경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를 변경 및 폐지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해야 한다.

4 환경장관은 용기 포장 폐기물의 배출억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할 때는 제1항에 규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주무장관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지도 및 조언)

제7조의5 주무장관은 용기 포장 폐기물의 배출억제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정 용기 포장 이용사업자에 대한 제7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을 감안하고, 용기 포장의 사용 합리화에 의한 용기 포장 폐기물의 배출억제의 촉진에서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정기 보고)

제7조의6 지정 용기 포장 이용사업자(특정 용기 이용사업자 또는 특정 포장 이용사업자로 한한다)로서 그 사업에서 사용하는 용기 포장의 양이 정령(政令)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하『용기 포장 대량 이용사업자』(容器包裝多量利用事業者)라 한다)은 연도마다 주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기 포장을 이용하는 양 및 용기 포장의 사용 합리화에 따라 용기 포장 폐기물의 배출 억제를 촉진하기 위해 임하는 조치의 실시 상황에 관하여 주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u>(권고 및 명령)</u>

- 제7조의7 주무장관은 용기 포장 대량 이용사업자의 용기 포장의 사용 합리화에 의한 용기 포장 폐기물의 배출억제 촉진 상황이 제7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과 비교하여 명백히 불충분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용기 포장 대량 이용사업자에 대한 그 판단의 근거를 내보이고 용기 포장의 사용 합리화에 의한 용기 포장 폐기물의 배출 억제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할 수 있다.
 - 2 주무장관은 제7조의7제1항에서 규정하는 권고를 받은 용기 포장 대량 이용사업자가 그 권고에 따르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 3 주무장관은 제1항에 규정하는 권고를 받은 용기 포장 대량 이용사업자가 제7조의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그 권고에 따르지 않은 내용을 공표된 이후에 여전히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에 관련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포장 용기의 사용 합리화에 의한 용기 포장 폐기물의 배출 억제 촉진을 명백히 해친다고 인정할 때는 심의회 등(국가 행정 조직법(1948년 법률 제120호)제8조에서 규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에서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것의 의견을 들어 해당 용기 포장 대량 이용사업자에 대한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하는 일을 명령할 수 있다.

제5장 분리수거

(기초 지자체(市町村) 분리수거 계획)

- 제8조 기초 지자체(市町村)는 용기 포장 폐기물의 분리수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5년 단위로 해당 기초 지자체(市町村) 구역 내에서의용기 포장 폐기물의 분리수거에 관한 계획(이하『기초 지자체(市町村) 분리수거 계획』(市町村分別収集計画)이라 한다)을 정해야 한다.
 - 2 기초 지자체(市町村) 분리수거 계획에 있어서는 해당 기초 지자체(市町村) 구역 내에서의 용기 포장 폐기물의 분리수거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해야 한다.
 - 각 연도에서의 용기 포장 폐기물의 배출량 목표
 - 그 용기 포장 폐기물의 배출 억제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 三 분리수거를 하는 것으로 용기 포장 폐기물의 종류 및 해당 용기 포장 폐기물의 수집에 관한 분리의 구분
 - 四 각 연도에서 얻을 수 있는 분리기준 적합물의 특정 분리기준 적합물별 양 및 제2조제6항에 규정하는 주무부령에서 정하는 양 목표
 - 五 분리수거를 실시하는 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六 분리수거에 이용하게 되는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 七 기타 용기 포장 폐기물의 분리수거의 실시에 관한 중요 사항
 - 3 시군구(시읍면) 분리수거 계획은 기본 방침에 입각하며, 동시에 재상품화 계획을 감안하여 정하는 것과 더불어 해당 기초 지자체(市町村)가 폐기물처리법 제26조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일반폐기물 처리 계획에 적합해야 한다.
 - 4 기초 지자체(市町村)는 기초 지자체(市町村) 분리수거 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광역 지자체(都道府縣) 지사에 제출함과 동시에 공표해야 한다.
 - 5 광역 지자체(都道府縣) 지사는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초 지자체(市町村) 분리 수거 계획의 제출을 받은 때에는 기초 지자체에 대한 분리수거의 실시에 관한 조언,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광역 지자체(都道府縣) 분리수거 촉진 계획)

제9조 광역 지자체(都道府縣)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5년 단위로 해당 광역 지자체(都道府縣) 구역 내에서의 용기 포장 폐기물의 분리수거 촉진에 관한 계획

- (이하 『광역 지자체(都道府縣) 분리수거 촉진 계획』(都道府県分別収集促進計画)이라 한다)을 정해야 한다.
- 2 광역 지자체(都道府縣) 분리수거 촉진 계획에서는 해당 광역 지자체(都道府縣) 구역 내에서의 용기 포장 폐기물의 분리수거 촉진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해야 한다.
 - 해당 광역 지자체(都道府縣) 구역 내에서의 용기 포장 폐기물에 대해 각 연도에서의 기초 지자체(市町村)별 배출량 목표 및 해당 배출 목표량을 합산하여 얻어지는 양
 - 二 해당 광역 지자체(都道府縣) 구역 내에서 얻을 수 있는 분리기준 적합물에서 각 연도에 얻을 수 있는 특정 분리기준 적합물별의 기초 지자체(市町村)별 양의 목표 및 해당 목표량을 합산하여 얻을 수 있는 각 연도에서의 특정 분리기준 적합물별 양
 - 三 해당 광역 지자체(都道府縣) 구역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제2조제6항에 규정하는 주 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각 연도에서의 기초 지자체(市町村)별 양의 목표 및 해당 목표량을 합산하여 얻을 수 있는 양
 - 四 <u>용기 포장 폐기물의 배출 억제 및 분리수거 촉진</u>의 의의에 관한 지식의 보급, 해당 광역 지자체(都道府縣) 구역 내에서의 기초 지자체(市町村) 상호간의 분리 수거에 관한 정보 교환 촉진, 기타 분리수거 촉진에 관한 사항
- 3 광역 지자체(都道府縣) 분리수거 촉진 계획은 기본 방침에 입각하며, 동시에 재상품화 계획을 감안하여 정해야 한다.
- 4 광역 지자체(都道府縣) 분리수거 촉진 계획(제2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해당 광역 지자체(都道府縣) 구역 내에서의 기초 지자체(市町村)가 정하는 기초 지자체(市町村) 분리 수집 계획(제8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적합해야 한다.
- 5 광역 지자체(都道府縣)은 광역 지자체(都道府縣) 분리 수집 촉진 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장관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공표해야 한다.
- 6 환경장관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모든 광역 지자체(都道府縣)에서 광역 지자체 (都道府縣) 분리수거 촉진 계획을 제출받을 때에는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특정 분리 기준 적합물별 양을 합산하여 얻을 수 있는 각 연도에서의 특정 분리기준 적합물별 총량을 공표해야 한다.
- 7 환경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광역 지자체(都道府縣) 분리수거 촉진 계획을 제출 받을 때에는 광역 지자체(都道府縣)에 대한 조언,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용기 포장 폐기물의 분리수거 등)

- 제10조 기초 지자체(市町村)는 기초 지자체(市町村) 분리 수집 계획을 정할 때에는 이에 따라서용기 포장 폐기물의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
 - 2 기초 지자체(市町村)는 용기 포장 폐기물의 분리수거를 하는 때에는 해당 기초 지자체 (市町村) 구역 내에서의 용기 포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분리 기준을 정함과 동시에, 이를 공지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3 제2항에 규정하는 분리기준이 정해진 때에 해당 기초 지자체(市町村) 구역 내에서의 용기 포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용기 포장 폐기물을 적정하게 분리하여 배출해야 한다.
 - 4 제2항에 규정하는 분리 기준을 정하는 기초 지자체(市町村)는 해당 기초 지자체 (市町村) 구역 내에서의 용기 포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해당 분리기준에 따라 용기 포장 폐기물을 적정하게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초 지자체(市町村)에 대한 비용의 지급)

제10조의2 기초 지자체(市町村)에서 특정 분리기준 적합물의 인도를 받은 지정법인(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법인을 말한다.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서 같다)또는 인정 특정 사업자(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인정 특정 사업자를 말한다)는 이 재상품화에 실제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총액으로서 주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 재상품화에 요구되는 예상 비용의 총액으로서 주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비용을 밑돌 때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중에서 각 기초 지자체(市町村)의 재상품화의 합리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감안하여 주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비용의 금액을 주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각 기초 지자체(市町村)에 대해 지불해야 한다.

제6장 재상품화의 실시

(특정 용기 이용사업자의 재상품화 의무)

제11조 특정 용기 이용사업자는 연도마다 주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에서 사용하는 특정 용기(제18조제1항의 인정에 관한 특정 용기 및 일본에서 수출한 상품에 관한 특정 용기를 제외. 제11조제2항제2호 口을 제외하고 이하 조항에서 같다)가 속하는 용기 포장 구분에 관한 특정 분리 기준 적합물에 대해 재상품화의무량의 재상품화를 해야 한다.

- 2 제11조제1항의 재상품화 의무량은 특정 분리 기준 적합물에 대해 제1호에서 정한 양에 제2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정하는 양에 해당하는 양으로 한다.
 - 재상품화 의무 총량에서 재상품화 의무 총량 중 특정 용기 이용사업자 또는 특정 용기 제조 등 사업자에 따라 재상품화가 되어야 하는 양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주무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얻는 양
 - 그 해당 특정 용기 이용사업자가 해당 특정 분리기준 적합물에 관한 특정 용기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 속하는 주무부령으로 정하는 업종마다 1에 해당하는 비율에 ロ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얻은 비율에 1시에 해당하는 양을 그에 해당하는 양으로 나누어 얻은 비율을 곱하여 얻을 수 있는 비율을 산정하고 이러한 업종마다 산정한 비율을 합산하여 얻어지는 비율
 - 1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양 중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에서는 해당 특정 용기를 사용하는 특정 용기 이용사업자 또는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에서 사용 되는 해당 특정 용기 제조 등을 하는 특정 용기 제조 등 사업자에 따라 재상품화가 되는 양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주무장관이 정하는 비율
 - 미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에서 해당 특정 용기를 사용하는 상품의 해당 연도에서
 판매 목표액의 총액을, 해당 총액 및 제조 등을 한 해당 특정용기로서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에서 사용되는 것의 해당 연도에서의 판매 목표액 총액과 합산액으로
 나누어 얻어지는 비율로서 주무장관이 정하는 비율
 - 기 해당 특정 용기 이용사업자가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에서 사용하는 해당 특정 용기의 해당 연도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사용량 중 용기 포장 폐기물로서 배출 되는 목표량으로 주무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양
 - 모든 특정 용기 이용사업자가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에서 사용하는 해당 특정용기의 해당 연도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사용량 중 용기 포장 폐기물로서 배출되는 예상량으로서 주무장관이 정한 양
- 3 제11조제1항제1호의 재상품화 의무 총량은 해당연도에서의 해당 특정 분리기준 적합물의 제19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총량에서 특정 사업자 책임 비율(해당 특정 분리기준 적합물의 양 중 특정 용기 이용사업자, 특정 용기 제조 등 사업자 또는 특정 포장 이용사업자(이하『특정 사업자』(特定事業者)라 한다)에 따라 재상품화가 되는

양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주무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곱하여 얻을 수 있는 양과 해당 연도의 전년도 말까지 얻을 수 있는 해당 특정 분리 기준 적합물로서 재상품화가 되지 않는 것의 양 중 해당 연도에서 특정 사업자에 의해 재상품화가 되는 양으로서 주무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는 양을 합산하여 얻은 양(그 양이 해당 연도에서의 해당 특정 분리 기준 적합물의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양에 특정 사업자 책임 비율을 곱해 얻을 수 있는 양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곱해 얻는 양)을 기초로서 주무장관이 정하는 양으로 해야 한다.

(특정 용기 제조 등 사업자의 재상품화 의무)

- 제12조 특정 용기 제조 등 사업자는 연도마다 주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생산 등을 하는 특정 용기(제18조제1항의 인정에 관한 특정 용기 및 일본에서 수출하게 되는 특정 용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속하는 용기 포장 구분에 관한 특정 분리기준 적합물에 대하여 재상품화 의무량의 재상품화를 해야 한다.
 - 2 제12조제1항의 재상품화 의무량은 특정 분리기준 적합물마다 제1호에 해당하는 양에 제2호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얻을 수 있는 양에 상당하는 양으로 해야 한다.
 -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양
 - 그 해당 특정 용기 제조 등 사업자가 제조 등을 하는 해당 특정 분리기준 적합물에 관한 특정 용기의 사용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속하는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 하는 주무부령에서 정하는 업종마다 / 에 해당하는 비율에서 ロ 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얻을 수 있는 비율에서 ハ 에 해당하는 양을 그 에 해당하는 양으로 나누어 얻을 수 있는 비율을 곱하여 얻을 수 있는 비율을 산정하고, 이러한 업종마다 산정한 비율을 합산으로 얻을 수 있는 비율
 - 亻 제11조제2항제2호 亻 에 해당하는 비율
 - ㅁ 처음부터 제11조제2항제2호 ㅁ 에 해당하는 비율을 공제하여 얻을 수 있는 비율
 - 기 해당 특정 용기 제조 등 사업자가 제조 등을 하는 해당 특정 용기로서 해당업종에 속하는 사업에서 사용되는 것의 해당 연도에서 판매하는 양 중 용기 포장 폐기물 로서 배출하는 목표량으로서 주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는 양
 - 그 모든 특정 용기 제조 등 사업자가 제조 등을 하는 해당 특정용기로서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에서 사용되는 것의 해당 연도에서 판매하는 양 중 용기 포장 폐기물로서 배출하는 목표량

(특정 포장 이용사업자의 재상품화 의무)

- 제13조 특정 포장 이용사업자는 연도마다 주무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그 사업에서 사용하는 특정 포장(제18조제1항의 인정에 관한 특정 포장 및 일본에서 수출하게 되는 상품에 관한 특정 포장을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용기 포장구분에 관한 특정 분리기준 적합물에 대하여 재상품화 의무량의 재상품화를 해야 한다.
 - 2 제11조제2항제1호의 재상품화 의무량은 특정 분리기준 적합물마다 제1호에 해당하는 양에 제2호에 해당하는 양을 제3호에 해당하는 양으로 나누어 얻을 수 있는 비율을 곱해 얻을 수 있는 양에 상당하는 양으로 해야 한다.
 - 제11조제2항제1호의 재상품화 의무 총량에서 동 호에 해당하는 양을 공제하여얻을 수 있는 양
 - 그 해당 특정 포장 이용사업자가 그 사업에서 사용하는 해당 특정 분리기준 적합물에 관한 특정 포장의 해당 연도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사용하는 양 중 용기 포장 폐기물로서 배출하는 예상량으로 주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는 양
 - 三 모든 특정 포장 이용사업자가 그 사업에서 사용하여 해당 특정 포장의 해당 연도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사용하는 양 중 용기 포장 폐기물로 배출하는 예상량으로서 주무장관이 정하는 양

(재상품화한 것과 같은 경우)

제14조 <u>특정 사업자</u>가 <u>제13조에서 규정하는 재상품화 의무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상품화에서</u> 지정법인과 제23조제1항으로 규정하는 재상품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의거하여 자신의 채무를 이행했을 때는 해당 <u>특정 사업자</u>가 그 위탁하는 양에 상당하는 해당 특정 분리기준 적합물의 양에서 재상품화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

(재상품화 인증)

- 제15조 <u>특정 사업자</u>는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에 규정하는 재상품화 의무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상품화를 하려고 할 때(지정 법인 이외의 자에 위탁하여 재상품화를 하려고 할 때를 포함한다)는 주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적합한 것에 대해서 주무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해당 재상품화에서 필요한 행위를 실시하는 자가 주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그 제15조제1호에 규정하는 자가 주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 三 해당 재상품화에 관한 제15조제2항5호에서 해당되는 양이 주무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리기준 적합물의 지역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
- 2 제15조제1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기타 주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주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다.
 - 성명, 명칭, 주소 및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 그 사업에서 사용하는 특정 용기, 그 사업에서 제조 등을 하는 특정 용기 또는 그 사업에서 사용하는 특정 포장의 종류 및 양, 해당 특정 용기 및 해당 특정 포장이 속하는 용기 포장 구분
 - 三 제15조제2항제2호의 용기 포장 구분에 관한 특정 분리기준 적합물의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 규정하는 재상품화 의무량
 - 四 해당 인정에 관한 재상품화를 시도하는 특정 분리기준 적합물
 - 五 제15조제2항제4호의 특정 분리기준 적합물의 양 및 해당 특정 분리기준 적합물의 기초 지자체(市町村)별 양
- 六 해당 인정에 관한 재상품화에 필요한 행위를 실시하는 자 및 해당 재상품화의 사용 으로 제공하는 시설
- 3 주무장관은 제15조제1항의 인정 신청에 관한 재상품화가 제15조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제15조제1항의 인정을 해야 한다.

(변경의 인정)

- 제16조 제15조제1항의 인정을 받은 <u>특정 사업자(이하『인정 특정 사업자』(認定特定事業者)라</u>한다)는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주무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는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 2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6조제1항의 변경의 인정에 준용한다.

(인정의 취소)

제17조 주무장관은 인정 특정 사업자가 제10조의2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때 및 제15조제1항의 인정에 관한 재상품화가 제1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는 해당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가 회수의 인정)

- 제18조 <u>특정 사업자</u>는 그 사용하는 특정 용기, 그 제조 등을 하는 특정 용기 또는 그 사용하는 특정 포장을 자가 회수하거나 다른 자에게 위탁하여 회수할 때에는 주무장관에 신청하여 그 수행하는 특정 용기 또는 특정 포장의 회수방법이 주무부령으로 정하는 회수율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것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2 주무장관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을 할 때는 해당 인증을 받은 자의 명칭, 주소 및 그 회수하는 특정 용기 또는 특정 포장의 종류, 양 및 회수방법을 공시해야 한다.
 -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자는 주무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정에 관한 회수의 실시 상황에 대하여 주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4 주무장관은 제18조제1항의 인정에서 회수방법이 제18조제1항으로 규정하는 주무 부령으로 정하는 회수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적절한 것으로 되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 5 제18조제2항의 규정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취소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18조제2항 중 『종류, 양 및 그 회수방법』은 어떤 『종류』로 해야 한다.

(지도 및 조언)

제19조 주무장관은 <u>특정 사업자</u>에 대한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에 규정하는 재상품화 의무량의 재상품화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재상품화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권고 및 명령)

- 제20조 주무장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재상품화를 하지 않는 특정 시업자가 있을 때는 해당 특정 사업자에 대한 해당 재상품화를 해야 한다는 권고를 할 수 있다.
 - 2 주무장관은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권고를 받은 특정 사업자가 그 권고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 3 주무장관은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권고를 받은 특정 사업자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권고에 따르지 않은 취지를 공표한 후에도 여전히, 정당한 이유없이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해당 특정사업자에 대해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장 지정법인

(지정 등)

- 제21조 주무장관은 일반 사단법인 또는 일반 재단법인으로서, 다음 조항으로 규정하는 업무(이하『재상품화 업무』(再商品化業務)라 한다)를 적정하고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그 신청에 따라 재상품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지정법인』(指定法人)이라 한다)로서 지정할 수 있다.
 - 2 주무장관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할 때는 해당 지정을 받은 자의 명칭, 주소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공시해야 한다.
 - 3 지정법인은 그 명칭, 주소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그 취지를 주무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4 주무장관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가 있을 때는 해당 신고에 관한 시항을 공시 해야 한다.

(업무)

제22조 지정법인은 특정 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분리기준 적합물의 재상품화를 해야 한다.

(업무의 위탁)

- 제23조 지정법인은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22조의 위탁에 관한 계약(이하『재상품화계약』(再商品化契約)이라 한다)의 체결 및 해당 위탁에 관한 요금(이하『위탁요금』(委託料金)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특정 사업자가 가입한단체에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것에 위탁할 수 있다.
 - 2 제23조제1항의 인가가 있었던 경우에, 제23조제1항의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재상품화 업무 규정)

- 제24조 지정법인은 재상품화 업무를 수행할 때는 그 시작 전에 재상품화 업무의 실시방법, 위탁요금의 비용의 계산방법, 기타 주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재상품화 업무 규정을 정하여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 2 주무장관은 제24조제1항의 인가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도 적합하다고 인정 할 때는 제24조제1항의 인가를 해야 한다.

- 재상품화 업무의 실시 방법 및 위탁요금의 비용 산출 방법이 적정하고 명확하게 정해진 것.
- 그 지정법인과 지정법인 간에 재상품화 계약 및 분리기준 적합물의 재상품화의 실시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책임 및 위탁요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고 명확하게 정해진 것.
- 三 특정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닌 것.
- 四 관련사업자 및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 것.
- 3 주무장관은 제24조제1항의 인가를 한 재상품화 업무 규정이 확실한 실시에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재상품화 업무 규정을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사업 계획 등)

- 제25조 지정법인은 매 사업 연도 주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상품화 업무에 관하여 사업 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 하고자 할 때도 같다.
 - 2 사업 계획서에는 특정 분리기준 적합물마다 위탁요금, 재상품화하려는 해당 특정 분리기준 적합물의 기초 지자체(市町村)별 비용을 기재해야 한다.
 - 3 지정법인은 주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 연도 종료 후 재상품화 업무에 관한 사업 보고서 및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주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업무의 휴폐지)

제26조 지정법인은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재상품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계약의 체결 및 해제)

- 제27조 지정법인은 재상품화 계약 신청자가 재상품화 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는 자인 경우, 그 자에 대해 지불 기한을 넘어 아직 지불되지 않은 위탁요금이 있을 때, 기타 주무 부렁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상품화 계약의 체결을 거절해서는 안된다.
 - 2 지정법인은 재상품화 계약을 체결한 특정 용기 이용사업자가 재상품화 계약에 관한 특정 용기를 이용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을 때, 기타 주무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상품화 계약을 해제해서는 안된다.

(비밀 유지 의무)

제28조 지정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이들의 직위로 재직한 자는 재상품화 업무에 관해 알아 얻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장부)

제29조 지정법인은 주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재상품화 업무에 관해 주무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보고 및 현장 검사)

- 제30조 주무장관은 재상품화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필요한 한도에서는 지정법인에 대한 재상품화 업무 또는 자산의 상황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직원에 지정법인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재상품화 업무 상황 또는 장부, 서류, 기타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 3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 때문에 인가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감독 명령)

제31조 주무장관은 제7장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는 지정법인에 대한 재상품화 업무에 관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지정의 취소 등)

- 제32조 주무장관은 지정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때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하 이 조에서는 『지정』(指定)이라 한다)을 취소 할 수 있다.
 - 재상품화 업무를 적정하고 확실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 할 때.
 - 二 지정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 三 제10조의2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때.
 - 四 제7장의 규정 또는 해당 규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했을 때 또는 제24조제1항의 인가를 받아 제24조제 1항에 규정하는 재상품화 업무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재상품화 업무를 실시했을 때.
 - 2 주무장과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제8장 기타 사항

(국가 등의 조치)

제33조 제2조제1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업에서 사용하는 용기 포장이 속하는 용기 포장구분에 관한 특정 분리기준 적합물에 대하여 이 법률의 취지에 따라서 폐기물 적정한 처리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확보를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재상품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가격 반영)

제34조 국가는 용기 포장 폐기물의 감량 및 용기 포장에 관한 자원의 유효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재상품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품 가격에 적절하게 반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그 비용의 원활하고 적정한 전가에 기여하기 위해 이법률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홍보활동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안내하고, 그 이해와 협력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초 지자체(市町村)장의 건의)

제35조 용기 포장 폐기물의 분리수거를 수행하는 기초 지자체(시읍명)장은 해당 분리수 거에 관한 분리기준 적합물에 재상품화가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주무분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장관에게 그 내용을 건의할 수 있다.

(재상품화에 따라 얻어진 것의 사용 의무 등)

- 제36조 분리기준 적합물의 재상품화에 따라 얻어진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48호)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용할 의무가 부과된다.
 - 2 그 사업에서 용기 포장을 사용하는 사업자 및 용기 포장의 제조, 가공 또는 판매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자원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에 관한 용기 포장 중 용기 포장 폐기물로서 배출하는 것의 분리수거를 촉진 하고, 이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분리기준 적합물의 재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폐기물 처리법의 특례 등)

제37조 지정법인, 인정 특정 사업자 또는 이러한 자의 위탁을 받아 분리기준 적합물의 재상품화에 필요한 행위(일반 폐기물의 운반 또는 재생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를

사업으로서 실시하는 자(해당 인정 특정 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는 자로서는 제15조제2항제6호에 규정하는 자로 한한다)는 폐기물 처리법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 제6항 규정에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행위를 사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2 지정법인은 제37조제1항에 규정하는 행위를 타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령(政令)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장부)

제38조 특정 용기 이용사업자, 특정 용기 제조 등 사업자 및 특정 포장 이용사업자는 주무 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준비하고, 특정 용기를 이용한 상품의 판매, 특정 용기 제조 등 또는 특정 포장을 사용하는 상품 판매 및 분리기준 적합물의 재상품화에 관한 주무부렁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보고 징수)

제39조 주무장관은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는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용기 이용사업자, 특정 용기 제조 등 사업자 또는 특정 포장 이용사업자에 대한 특정 용기를 사용하는 사업, 특정 용기 제조 등 사업 또는 특정 포장을 사용하는 사업의 상황 및 분리기준 적합물의 재상품화의 상황에 관한 보고할 수 있다.

(현장 검사)

- 제40조 주무장관은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는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원에 특정사업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 3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 때문에 인가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제41조 삭제

(협의)

제42조 환경장관은 제2조제6항 환경부령을 정하고자 하는 때는 경제산업장관, 재무장관, 후생노동장관 및 농림수산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주무장관 등)

- 제43조 이 법률에서의 주무장관은 환경장관, 경제산업장관, 재무장관, 후생노동장관 및 농림수산장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장관으로 한다.
 - 제7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의 책정, 제7조제2항에 규정하는 해당사항의 개정, 제7조의5에서 규정하는 지도 및 조언, 제7조의6 규정에 따른 내용의 접수, 제7조의7제1항에 규정하는 권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표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 및 제39조 규정에 따른 내용의 징수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 검사(제4장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수행할 것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해당 지정 용기 포장 이용사업자가 용기 포장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소관하는 장관
 - 그 제11조제2항제2호 ㅁ 규정에 따른 비율 결정, 제11조제2항제2호 그 규정에 따른 양의 결정, 제1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양의 결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인증,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접수,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변경의 인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취소,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인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취소,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지도 및 조언, 제20조제1항에 규정에 따른 권고,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표 및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 및 제39조 규정의 규정에 따른 내용의 징수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 검사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 환경장관, 경제산업장관, 해당 특정 용기 이용 사업자 또는 해당 특정 포장 이용 사업자가 특정 용기 및 특정 포장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사업 및 해당 특정 용기 제조 등 사업자가 수행하는 특정 용기 제조 등의 사업을 소관하는 장관
 - 三 제12조제2항제2호 二 규정에 따른 양의 결정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기초 지 자체(市町村)장의 제기에 관한 사항 : 환경성관 및 경제산업장관
 - 2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주무장관의 권한은 제43조제1항 단서(제2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장관, 경제산업장관, 해당 특정 용기 이용사업자 또는 해당 특정 포장 이용사업자가 특정 용기 및 특정 포장을 사용하여수행하는 사업 및 해당 특정 용기 제조 등 사업자가 수행하는 특정 용기 제조등의 사업을 소관하는 장관이 각자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은 무방하다.

- 3 이 법률에서의 주무부령은 환경장관, 경제산업장관, 재무장관, 후생노동장관 및 농림 수산장관이 발하는 명령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주무부령에서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대로 한다.
 - 제7조의4제1항 및 제7조의6의 주무부령 : 해당 지정 용기 포장 이용사업자가 용기포장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소관하는 장관이 발하는 명령
 - 그 제11조제2항제2호 ㅁ 규정에 따른 비율의 결정, 제11조제2항제2호 = 규정에 따른 양의 결정, 제13조제2항제3호 규정에 따른 양의 결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인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접수,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변경의 인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취소,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인정, 제18조제2항 (제18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공시,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내용의 접수, 제18조제4항에 따른 인정의 취소,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지도 및 조언,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권고,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표,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내용의 징수,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 검사 (제43조제3항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 환경장관, 경제산업장관, 해당 특정 용기 이용 사업자 또는 해당 특정 포장 이용 사업자가 특정 용기 및 특정 포장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사업 및 해당 특정 용기 제조 등의 사업을 소관하는 장관
 - 三 제2조제10항제1호, 제12조제1항, 제12조제2항제2호ハ 및 제35조 주무부령 : 환경 장관 및 경제산업장관이 발하는 명령
- 4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장관의 <u>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는</u> 정령(政令)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광역 지자체(都道府縣) 지사가 실시</u>할 수 있다.
- 5 제17조의6,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장관의 권한은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지분부국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의견 청취)

제44조 주무장관은 <u>제10조의2</u>에서 제13조까지 규정하는 주무부령, 비율, 율 또는 양을 정하거나 제24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의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사업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경과 조치)

제45조 이 법률의 규정에 기초하여 명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명령에서 그 제정 또는 개폐에 동반하는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의 소요의 경과 조치(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제9장 벌칙

제46조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에 위반하는 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의2 제7조의7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그 위반행위를 한 지정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은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조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재상품화 업무의 전부를 폐지했을 때.
- 그 제29조 규정에 따라 장부의 기재를 하지 않고 허위 기재를 하거나 장부를 보존하지 않았을 때.
- 三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였을 때.
- 四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 하였을 때.

제48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조의6 또는 제39조 규정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그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장부의 기재를 하지 않고 허위 기재를 하거나 장부를 보존 하지 않은 자
- 三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49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및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및 개인의 업무에 관한 제46조에서 제48조까지의 위반 행위를 했을 때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각 해당 조의 형벌을 부과한다.

부칙 (2006년 6월 15일 법률 제1760호)

(시행 기일)

- 제1조 이 법률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은 해당 각 호에 정하는 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조 규정 공포일
 -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 규정, 제18조 개정 규정(제18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을 제외한다), 제43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제 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 제43조제3항』을 『제43조제2항(제43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따른 공시,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내용의 접수, 제43조제4항』으로 수정하는 부분에 한한다) 및 제46조의 개정 규정 공포일 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일
 - 프 목차 개정 규정(『제10조』를 『제10조의2』로 수정하는 부분에 한한다), 제4장 중 제10조의 다음에서 1개 조를 추가하는 개정 규정 및 제11조,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 제32조, 제37조 및 제44조 개정 규정 및 부칙 제4조의 규정 : 2008년 4월 1일

(정기보고에 관한 경과 조치)

제2조 이 법률에 따른 개정 후의 용기 포장에 관한 분리 수집 및 재상품화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신법』(新法)이라 한다) 제7조의6의 규정은 2007년도 이후의 연도에 관한 용기 포장의 양 및 조치의 실시 상황에 적용한다.

<u>(정령(政令)에 대한 위임)</u>

제3조 부칙 제2조에 정하는 것 외,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 조치는 정령(政令)으로 정한다.

(검토)

제4조 정부는 부칙 제1조제3호에 규정하는 규정의 시행 후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신법의 시행 상황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법의 규정에 대한 검토를 더해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